

제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88 호
의결년월일	2005. 3. . (제 14 회)

제출일자	2005. 3. .
제출자	계룡시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3호)에 따른 여유기구 설치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조직보강지침 등에 따라 본청기구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市 본청에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유기구인 당면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함(안 제3조).
- 나. 일부 행정기구의 폐치·분합 등으로 인한 실·과·단장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함(안 제3조).

3. 입법예고 : 의견반영

- 기간 : 2005. 2. 23. ~ 3. 14 (20일간)

4. 참고사항

<기구 신설 등 조정(안)>

구분	조 정(안)
○ 과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 담당신설	· 서무담당, 재산관리담당, 체육진흥담당, · 민방위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 담당폐지	· 하천방재
○ 담당통폐합	· 전산통신담당 (전산담당+통신담당)
○ 담당소속변경	·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을 → 총무과로 · 총무과 부과담당, 징수담당을 → 시민봉사과로
○ 담당명칭변경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을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으로 · 건설과 상하수도담당을 → 건설과 상수도담당으로
○ 분장사무조정	· 건설과 소관의 하수도업무를 → 환경녹지과로 · 농업경제과 소관의 교통업무를 → 건설과로 · 건설과 소관의 방재업무를 → 재난안전관리과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후단 “도시주택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시장 공약사항 관리
- 다. 시의회 지원 협력 및 총괄 조정
- 라. 주요정책의 개발·심의·조정 및 시정종합발전계획과 특별과제 연구
- 마.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지원, 시민의식함양운동 추진
- 바. 민·군·관 화합행사 추진 및 지원
- 사. 계룡대 지원·협의 및 계룡시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아. 군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군시설에 대한 민간견학 안내지원
- 자. 시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 추진
- 차. 경영수익 실태분석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 카.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 타. 공무원의 문책·징계 요구
- 파. 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의 홍보, 시보 및 시정홍보물 발간
- 하.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 거. 시정홍보위원 및 홍보조직(DM망) 운영
- 너. 시정기록 사진촬영 및 홍보용 사진 관리
- 더. 시정홍보자료 작성제공 등 언론사간의 연계 체제 유지
- 러. 신문·잡지 등 구독 계획 수립 및 자료관리
- 머. 통계에 관한 사항
- 버. 행정정보화 및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
- 서. 통신에 관한 사항

어.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 관한사항

2. 총무과장

가. 서무,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의 인사, 고시, 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다. 행정구역 및 조직관리

라.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마. 여론행정 및 동향수집분석

바.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회계·계약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새마을, 특수지역개발,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카. 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

타. 자료관 운영관리

파.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조에 관한사항

하.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거.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시민봉사과장

가.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나. 민원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다. 민원서류의 수발·심사 및 창구즉결민원 처리

라. 호적사무

마.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아. 지적공부 정리보존 및 지적민원처리

자. 지가동향 관리

차.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카.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타. 토지거래 허가·신고 등 토지거래 규제 업무

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하. 시자금의 배정·출납관리 및 시금고 운영

4. 복지문화과장

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나. 저소득주민보호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 다.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구호사업
- 라. 보훈업무 및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 마.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
- 바. 여성문제상담 및 요보호여성 선도사업
- 사. 노인복지 및 경노사상 고양에 관한 사항
- 아.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 자. 가정의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 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관리
- 카.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 파.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관리
- 하. 도서관 건립 및 문화의 집 구성에 관한 사항

5. 환경녹지과장

- 가. 환경보호종합계획 수립 추진
- 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업무
- 다. 대기·수질·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관리
- 라. 국토대청결운동
-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바.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
- 사. 공중화장실 관리
- 아.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자. 녹지공원 조성 관리 및 보호수 관리
- 차. 국토공원화사업
- 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료부과 징수
- 타.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 파.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인가

6. 농업경제과장

- 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 나. 농민단체 육성 지원
- 다. 식량작물 생산 및 농업재해대책(양수기 관리 포함) 추진
- 라. 농지전용 인·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 마. 농기계 보급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
- 바. 정부양곡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관리

- 사. 농·수·축·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아. 잡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에 관한 사항
- 자.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 차. 산촌종합개발 및 천연림보육사업
- 카. 종축관리 등 축산에 관한 사항
- 타.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 파.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 하.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거.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건설과장

- 가. 건설업면허 및 건설기계 사업체 인·허가 업무
- 나.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
- 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라.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 마. 경지정리 및 농지기반관리
- 바. 정주권개발사업
- 사. 토목공사 지도감독
- 아. 시도·농어촌도로, 교량의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 자.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 차. 하천 및 소하천 종합정비 및 공사 시행
- 카.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 타.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파.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 하.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 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8. 도시주택과장

- 가. 도시개발종합계획 수립 조정
- 나. 지역지구단위 계획 수립
- 다. 도시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 라.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 마. 도시개발구역 지정
- 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사. 시범도시개발
- 아. 택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자. 공영개발특별회계관리

차. 건축민원 인·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카.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

타. 공동주택 건설지도 및 사후관리

파. 주거환경개선사업

9. 재난안전관리과장

가. 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난지원복구에 관한사항

다. 비상대책업무 및 민방위

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마. 물자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관리

바. 소방관련업무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 재해구호 및 이재민대책

아. 공익근무요원 관리

자. 기타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당면사업추진단을 둔다.

가. 지역의 특색 사업에 관한 사항

나.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사업에 관한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1994.12.20>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 (실·과의 설치)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바. (생략) 사. 계룡대 지원·협의 및 계룡협조회 구성·운영 아.~버. (생략) 서. <u>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u> 어. <신 설> 2. 총무과장 가.~사. (생략) 아. <u>비상대책업무 및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u> 자. <u>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u> 차. <u>시자금의 배정·출납관리 및 시금고 운영</u> 카. <u>회계·계약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 타. <u>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u> 파. <u>새마을, 특수지역개발,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u> 하. <u>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u> 거. <u>통신에 관한 사항</u> 3. 시민봉사과장 가.~타. (생략) 파.~하. <신 설> 4. 복지문화과장 가.~하. (생략)	제3조 (실·과의 설치) ①----- -----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생략 1. 기획감사실장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계룡시정책협의회----- ----- 아.~버. (현행과 같음) 서. <u>통신에 관한 사항</u> 어. <u>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 관한사항</u> 2. 총무과장 가.~사. (현행과 같음) 아. <u>회계·계약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 자. <u>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u> 차. <u>새마을, 특수지역개발,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u> 카. <u>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u> 타. <u>자료관 운영관리</u> 파. <u>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조에 관한사항</u> 하. <u>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u> 거. <u>평생학습에 관한 사항</u> 3. 시민봉사과장 가.~타. (현행과 같음) 파. <u>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u> 하. <u>시자금의 배정·출납관리 및 시금고 운영</u> 4. 복지문화과장 가.~하.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5. 환경녹지과장 가.~차.(생략) 카.~타.<신 설> 6. 농업경제과장 가.~거.(생략) 너. <u>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u> 더. <u>주차장 설치 및 관리</u> 7. 건설과장 가.~차. (생략) 카. <u>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u> 타. <u>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u> 파. <u>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u> 하. <u>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u> 거.<신 설> 8. 도시주택과장 가.~라.(생략) 마. <u>사업단지 지정</u> 바.~파.(생략) 9. <신 설> 가.~자.<신 설> 제3조의2<신 설> 1.~2.<신 설>	5. 환경녹지과장 가.~차.(현행과 같음) 카. <u>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료부과징수</u> 타. <u>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u> 파. <u>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인가</u> 6. 농업경제과장 가.~거.(현행과 같음) 너. <삭 제> 더. <삭 제> 7. 건설과장 가.~차.(현행과 같음) 카. <u>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u> 타. <u>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u> 파. <u>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u> 하. <u>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u> 거. <u>주차장 설치 및 관리</u> 8. 도시주택과장 가.~라.(현행과 같음) 마. <u>도시개발구역 지정</u> 바.~파.(현행과 같음) 9. 재난안전관리과장 가. <u>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u> 나. <u>재난지원복구에 관한사항</u> 다. <u>비상대책업무 및 민방위</u> 라. <u>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u> 마. <u>물자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관리</u> 바. <u>소방관련업무 및 의용소방대 지원</u> 사. <u>재해구호 및 이재민대책</u> 아. <u>공익근무요원 관리</u> 자. <u>기타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u> 제3조의2(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 하여여유기구로 당면사업추진단을 둔다. 1. <u>지역의 특색 사업에 관한 사항</u> 2. <u>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사업에 관한 사항</u>